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2] <개정 2026. 1. 6.>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31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상이등급별	월 정지금액(천원)	상이등급별	월 정지금액(천원)
1급 1항	1,778	3급	1,267
1급 2항	1,778	4급	777
1급 3항	1,778	5급	338
2급	1,480	6급 1항	153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구분	월 정지금액 (천원)
가.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1) 배우자	360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701
3) 부모 또는 조부모	323
나.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와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유족	
1) 배우자	75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75
3) 부모 또는 조부모	46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의 유족(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를 말한다)	274

비고: 사망한 사람이 2명 이상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한 사람 1명당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에 해당하는 월 정지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정지한다.